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 -

2021. 7. 1.

## 목 차

I.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 .....	1
II. 재정총량 변화 .....	2
III. 주요 내용 .....	3
1. 추가경정예산안 .....	4
1) 코로나19 피해지원 .....	4
2) 백신·방역 보강 .....	8
3)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	9
4) 지역경제 활성화 .....	16
2. 기정예산 패키지 .....	17

## I.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

### ① 추진배경: 코로나 피해·방역 지원 + 민생 회복 뒷받침

- ❶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상생을 위한 국민 지원
  -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및 추가 지원, 코로나 상생 회복을 위한 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등 추진
- ❷ **코로나19** 방역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지원 필요
  - 백신의 신속한 확보 및 접종 지원, 선제적 방역 대응 및 의료기관 손실보상,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등 필수소요 보장
- ❸ **新양극화** 선제대응을 위한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경제 개선
  - 지방교부세(금) 등 지방재정 보강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뒷받침

### ② 기본방향: 추가세수 등을 추경 재원·채무 상환에 활용 → 코로나19 대응 및 고용·민생·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❶ **(재원)** 35조원 (추가세수 31.5 + '20년 세계잉여금 1.7 + 기금재원활용 등 1.8조원)
- ❷ **(추경안)** 33조원 (중앙 20.8, 지방교부금 12.2조원)
  - 내용: ①코로나19 피해지원 15.7(국비 13.4), ②백신·방역 4.4, ③고용·민생안정 2.6, ④지역경제 활성화 12.6조원
- ❸ **(채무상환)** 2조원
- ❹ **(일정)** 7.1(목) 임시 국무회의, 7.2(금) 국회제출(잠정)

## II. 재정총량 변화

### ① 총지출 증가율 : 전년대비 +18.0% 증가 (1차 추경 대비 +6.2%p)

- **(총수입)** 1차 추경 대비 +31.6조원 증가 (483.0 → 514.6조원)
  - \* '21년 국세수입: (당초) 282.7조원 → (변경) 314.3조원(+31.5조원)
- **(총지출)** 1차 추경 대비 +31.8조원\* 증가 (572.9 → 604.7조원)
  - \* 추경 규모는 33조원이나 소진기금 집행잔액(△1.1조원) 등 반영

### ② 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 1차 대비 +0.1%p (△4.5 → △4.4%), 국가채무 1차 대비 △1.0%p (48.2 → 47.2%)

- **(통합재정수지)** GDP대비 △4.5% → △4.4% (+0.1%p)
  - \* 적자 규모는 △89.9 → △90.1조원으로 변동되나, 경상성장률 전망 상향('21년 당초 4.4 → 변경 5.6%)에 따라 GDP 대비 비율은 개선
- **(국가채무)** GDP대비 48.2 → 47.2% (△1.0%p)
  - 국가채무규모는 965.9 → 963.9조원으로 △2.0조원 감소

	'20년		'21년			1차대비 (B-A)
	본예산	4차 추경	본예산	추경		
				1차(A)	2차(B)	
◇ 총수입 (증가율)	481.8 (1.2)	470.7 (△1.1)	482.6 (0.2)	483.0 (0.3)	514.6 (6.8)	+31.6
▪ 국세수입 (증가율)	292.0 (△0.9)	279.7 (△5.1)	282.7 (△3.2)	282.7 (△3.2)	314.3 (7.6)	+31.5
◇ 총지출 (증가율)	512.3 (9.1)	554.7 (18.1)	558.0 (8.9)	572.9 (11.8)	604.7 (18.0)	+31.8
▪ 통합재정수지 (GDP대비,%)	△30.5 (△1.5)	△84.0 (△4.4)	△75.4 (△3.7)	△89.9 (△4.5)	△90.1 (△4.4)	△0.2 (+0.1%p)
▪ 국가채무 (GDP대비,%)	805.2 (39.8)	846.9 (43.9)	956.0 (47.3)	965.9 (48.2)	963.9 (47.2)	△2.0 (△1.0%p)*
※ 국가채무 순증	82.0	123.7	109.1	118.9	116.9	△2.0

\* (국가채무 △1.0%p) 추경 순효과 △0.1%p + GDP전망 변경 효과 △0.9%p

### Ⅲ. 주요 내용

규모	<b>총 대책규모 36조원</b> <b>= 추경안 33.0조원 (중앙 20.8, 지방 12.2조원) + 기정예산 3.0조원</b>	
추가 경정 예산 (33.0 조원)	①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15.7조원 (국비 13.4)
	① 소상공인 피해지원	3.9
	▶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0.6조원)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25조원, 금지·제한 및 경영위기업종)	
	②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총 10.4 (국비 8.1)
	②-1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0.3
	③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1.1
	② 백신·방역 보강	4.4조원
	▶ 백신구매, 접종, 진단검사 등 하반기 소요 보강	
	③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2.6조원
▶ 고용 조기회복 지원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안전망 강화 등)	1.1	
▶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일자리, 창업, 주거, 생활 등)	1.8 <sup>1)</sup>	
▶ 문화·예술·관광업계 활력 제고	0.3 <sup>2)</sup>	
▶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안전망 보강	0.6 <sup>3)</sup>	
* 1) 고용대책 중복 0.4, 기정예산 0.5, 2) 고용·청년대책 중복 0.1, 3) 고용·청년대책 중복 등 0.2조원		
④ 지역경제 활성화	12.6조원	
▶ 지역상권·농어가 지원	0.4	
▶ 지방재정 보강 (지방교부세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2.2	
기정 예산 (3.0 조원)	□ 취약계층 주거·생계부담 등 완화	3.0조원
	▶ 청년·저소득층 주거부담 완화	0.9
	▶ 취약계층 돌봄·생계·금융부담 완화	2.1

### 추가경정예산안 [33.0조원]

1	코로나19 피해지원(3종 패키지)	(+15.7조원) (국비 13.4)
1	소상공인 피해지원	(+3.9조원)
◇ 소상공인의 ①향후 방역 손실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②기존 피해에 대한 추가 지원 실시		
①	소상공인 손실 제도적 지원	(+0.6조원)
□	(손실보상 법제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21.6.30일 법사위 의결)에 따라, 7월 이후의 집합금지·제한조치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	
○	(지원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심각한 손실을 받은 소상공인 + α*	
	*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신설 예정)의 심의결과에 따라 소기업 등도 지원 가능	
○	(지원금액) 사업소득 감소분* (인건비·임차료 추가반영)	
	* 방역조치 수준·기간, 신청인의 소득·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재정소요) 0.6조원	
	* '21년 총 1.2조원 소요 (월 0.2조원 × 6개월('21.7~12월))	
	→ 정산 소요기간(약 3개월) 감안하여, 7~9월분 0.6조원 반영	
	** '21.7~9월(3개월) 피해분은 금년 집행, 10~12월(3개월)은 내년 집행	
○	(지급절차) 국세신고 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업소득 감소액 산정	
	→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 간편신청으로 신속 지급	
□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중층적 손실지원을 위해 신규가입한 금지·제한 업종에 6개월간 月 최대 4만원*(국비·지방비 각 50%) 지원(10만명, 124억원)	
	* '20년 신규가입자 평균 월부금액 22만원의 약 20% 수준	

## 2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25조원)

- (목적) 그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소기업을 중심으로 추가 피해지원 실시
- (지원대상) '20.8월 이후 ①1회라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거나 ②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 113만명\*  
\* (금지) 유흥업종 등 20만명, (제한) 음식점 등 76만명, (위기) 여행업 등 17만명
- (지원기준) '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 감소시 지원  
\*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①'19.年-'20.年, ②'19.上-'20.上, ③'19.下-'20.下, ④'20.上-'21.上, ⑤'20.上-'20.下, ⑥'19.上-'21.上 등 비교에서 1개라도 감소한 경우 지원
- (지원유형) ①방역수준, ②방역조치 기간, ③규모, ④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기존 7개 → 24개로 유형 세분화

- ① (수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으로 크게 구분
- ② (기간) 총 46주('20.8.16~'21.6.30일) 중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 장기, 단기로 구분  
\* 집합금지·제한 대상자를 각각 절반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간 설정(사업공고시 확정)
- ③ (규모) '20년 연매출 8,000만원, 2억원, 4억원을 기준으로 구분  
\* 간이과세 기준(8,000만원), 소상공인 평균매출(2억원), 소상공인 매출 상위 20%(4억원) 감안
- ④ (업종) 매출감소 △40% 이상(여행업·공연업 등), △20~△40%(전세버스 등)

- (지원금액) 최대 900만원 (버팀목플러스\* 대비 +400만원 인상)
- (재정소요) 3.25조원

구분		금액(만원)				사업체 수 (만개)	소요 (조원)
		'20년 매출 4억원 이상	'20년 매출 4억 ~ 2억원	'20년 매출 2억 ~ 8천만원	'20년 매출 8천만원 미만		
집합금지	장기	900	700	500	400	10	0.5
	단기	700	500	400	300	10	0.3
영업제한	장기	500	400	300	250	38	1.2
	단기	400	300	250	200	38	1.0
경영위기	△40% 이상	300	250	200	150	3.4	0.1
	△20~△40%	250	200	150	100	13.1	0.2
계		900~100				112.5	3.25

- (지급절차) 버팀목플러스\*와 동일하게 온라인 간편지급 실시

## 2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4조원)

(국비 8.1, 지방비 2.3)

◇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다수 국민들에 대한 보상, 新양극화 해소 및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중산층을 넓게 포괄하는 국민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
- (지원금액)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 (1인)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
- (재정소요) 10.4조원 (국비 8.1 + 지방비 2.3)  
\* 보조율 : 서울 70%, 그 외 80%
- (지급방식) 직장·지역 가입자의 건보료를 활용하여 대상 선정 → 온·오프라인 신청시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등 선택 수령
- (집행지원) 신청·접수·이의신청 등 지원을 위해 전국 시·군·구에 보조인력 및 각종 부대비용 지원  
\* 7.1일 범부처 공식 TF 출범 (행안부 차관(팀장), 관계부처 1급)

## 2-1

##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0.3조원)

◇ 코로나19 피해가 큰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추가 지급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명
- (지원금액) 1인당 추가 10만원 (4인 가구 기준 추가 40만원)  
\* (1인) 10만원, (2인) 20만원, (3인) 30만원, (4인) 40만원, (5인) 50만원 ~
- (재정소요) 0.3조원 (국고 100%)
- (지급방식) 현금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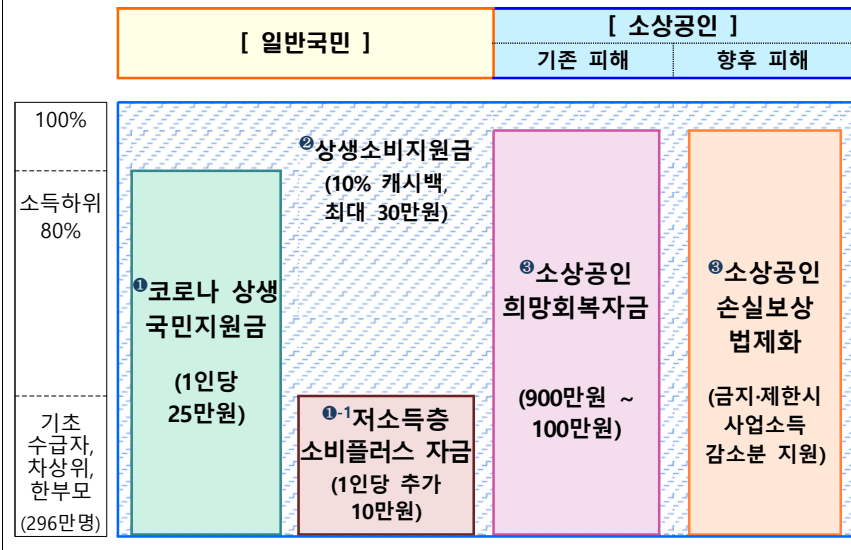
### 3 상생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1.1조원)

◇ 내수 상생 회복을 위해 하반기 소비 증가분의 10%를 캐시백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한시 지원

- (지원내용) '21.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月 카드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으로 환급  
\*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사용금액 제외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30만원 (월별 10만원 한도)
- (재정소요) 1.1조원
- (지급절차) 1인 1전담 카드사 지정 → 전담카드사에서 개인 보유 전체 카드의 월간 실적 확인 → 다음달초 캐시백 지급  
※ 3개월간 시행 후 집행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 검토

【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 15.7조원 】



### 2

### 백신 · 방역 보강

(+4.4조원)

#### 1 코로나19 백신 구매 · 접종 · 피해보상 (+2.0조원)

- (백신구매) 금년 1억 9,200만회분 확보, 변이 바이러스 대응 백신 구입 등 백신의 신속한 확보·구매를 차질없이 뒷받침(1.5조원)
- (백신접종) 접종 편의성·신속성 제고를 위해 공공예방접종센터 증설(267→282개) 및 민간위탁의료기관 접종 확대(0.5조원)
- (피해보상)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피해보상금 확대\*, 인과성이 불분명한 중증이상반응 치료비 지원\*\*(181억원)  
\*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장애시 최대 4.4억원 보상  
\*\* 인과관계 근거자료가 부족한 중증 이상반응 발생시 치료비 최대 1,000만원 지원

#### 2 방역대응 및 손실보상 (+2.2조원)

- (방역대응) 코로나 진단검사 확대 및 격리자 생활지원 등(1.3조원)  
 < 코로나19 방역대응 지원내용 >
  - (진단검사) 유증상자 진단검사비 지원 및 요양시설 등 고위험군 선제검사 확대
  - (생활지원 등) 격리자의 생계지원을 위한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 (의료기관 손실보상) 방역 일선 의료기관의 안정적 의료대응체계 (치료병상 확보) 유지 및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확대(0.9조원)

#### 3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및 국내백신 개발 (+0.2조원)

- (백신허브 구축) 백신·원부자재 생산 및 백신제조·개발공정 인력양성을 위한 필수시설·장비 구축 지원(208억원)
  - (임상개발) 국내백신 개발 가속화를 위해 임상 3상 진입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임상비용 지원(980억원)
  - (백신 선구매) 국내백신 개발에 대비한 선구매\* 추진(720억원)  
\* 2상 중간결과 등을 토대로 안전성, 유효성, 성공가능성, 접종용이성 및 개발 일정,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 ※ '22년 예산에 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 포함 추진

### 3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2.6조원]

#### 1 고용 조기회복 지원 [+1.1조원]

◇ 40만명 이상 규모의 고용 조기회복 지원을 뒷받침

- ①신규 일자리 창출 16.4만명 + ②SW·조선업 등 인력양성 8.8만명 + ③고용유지지원 등 고용안전망 보완 15.3만명

구분	① 신규 일자리 창출	② 직업훈련·인력양성	③ 고용 안전망 보완	계
투자규모	0.6조원	0.2조원	0.4조원	1.1조원
지원인원	16.4만명	8.8만명	15.3만명	40.5만명
일자리 창출	16.4만명	-	-	16.4만명

※ 고용 조기회복 지원을 위해 고보기금 0.4조원 재정보강

#### ① 신규 일자리 창출 (16.4만명, +0.6조원)

- (목표) ①일자리 조기회복, ②청년고용 촉진, ③백신·방역·안전 수요대응, ④취업취약계층 고용보완의 4대 분야 일자리 창출
- (인원) 총 16.4만명 일자리 창출

※ 분야별 일자리 창출 지원

계	16.4만명	주요 지원사업
일자리 조기회복	3.0만명	• 실업자 채용을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확대
청년 고용촉진	3.0만명	• AI·SW 등 신산업 분야 및 지역기반기업 채용지원(1.8만명) • 여행·공연·체육 등 문화 분야 일자리(0.6만명) • 멘토링 등 교육 분야 일자리(0.6만명)
백신·방역·안전 수요 대응	6.7만명	• 백신 접종 보조 및 보건소 인력 지원(1.2만명) • 공공시설·학교·관광지 방역지원(5.5만명) • 산재 예방 등 안전 분야 일자리(400명)
취업 취약계층	3.7만명	• 노인·저소득층·장애인 일자리 확대(3.5만명) • 예술인 일자리 지원(0.2만명)

#### ② SW·조선업 등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 (8.8만명, +0.2조원)

- (SW 인력) 기업주도형 인력양성모델 확대로 1만명 추가 양성  
\* '25년까지 8.9만명 추가 양성(기존계획 32.4 + 추가 8.9 = 총 41.3만명 양성)

- (청년 구직자) 기업 주도형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과정(3,000명) 신설 등 K-Digital Training\* 확대(2→2.4만명 478억원)  
\* K-Digital Training : 기업 실무 문제를 프로젝트 방식으로 풀어가는 교육훈련
- (재직자) SW 분야 기업 맞춤형 훈련방식(S-OJT) 신설 지원(4,000명)  
\* S-OJT(Structured On the Job Training) : 이론 중심의 범용 훈련이 아닌 기업맞춤형 훈련 방식
- (전문인력) 산업현장 수요에 맞춰 AI 복합교육 과정 확대(5,400 → 5,800명) 및 SW중심대학 5개소(9→14개소) 추가 선정(189억원)
- (조선업) 한시 특별 훈련수당(140만원)을 지급하는 채용연계 교육(600→ 1,200명, +39억원) 및 유급휴가 연계형 특화 훈련\* 확대  
\* 경남 시범시행 → 조선업 밀집지역 전체(울산, 부산, 전남 등)로 확대(기정예산 72억원, +2,768명)
- 중소기업 대상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확충(기금변경 150억원)  
\* 복리후생을 위해 중소기업들이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지원, 조선업 종사자 +7만명 수혜
- (건설업) 건설업 종사자의 직업능력(용접, 배관 등) 향상을 위한 기능훈련 지원인원 확대(0.7→ 0.8만명, 9.8억원)
- (직업훈련) 채용예정자 대상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 수당 月 20→ 30만원 한시 인상(3,500명)

#### ③ 고용유지 지원 등 고용안전망 보완 (15.3만명, +0.4조원)

- (고용유지지원금) 항공·여행·영화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90% 특례지원 기간을 6개월→ 9개월로 연장(0.2조원)
- (직업훈련 생계비) 장기 훈련시 생계비 경감을 위해 연 1%의 초저금리 생계비 융자(2,000만원 한도) 확대(2.7→ 3.4만명, 521억원)
- (산재예방) 사고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1.2→ 1.5만개)하고 안전 컨설팅 업종을 제조업에서 건설업(1만개)까지 추가(407억원)
- (취업취약계층) 장애인 구직 지원 서비스(2→ 2.4만명, 44억원) 및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확대(1.2→ 2.1만명, 272억원)

## 2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1.8조원)

※ 고용대책 증복소요 0.4조원, 기정예산 0.5조원

◇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을 위해 ①일자리, ②창업, ③주거, ④생활·금융 등 4대 분야 중점 지원

### 1 청년 일자리 지원 (+0.4조원)

※ 고용대책 증복 0.4조원

- (신규일자리) AI 등 신산업분야 및 지역기반 기업의 채용 지원 및 체육·공연·관광·교육 등 청년 수요가 높은 분야 일자리 확대(+3만명)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확대하여 실업청년 1.5만명 고용 추진
- (직업훈련) 청년 실무인력 등 SW인력 1만명 추가 양성(755억원)
- (학생취업 지원) 직업계고의 학생 자격증 취득비 50만원(2.4만명, 60억원) 및 미취업 졸업생의 고교 실습보조 지원(580명, 21억원)
  - 전문대 재학·졸업생의 자격증 취득비 70만원 지원(3만명, 215억원)
  - 대학생 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을 4→3~4학년 확대(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하는 등 대학생 지원인원 2만명 추가(236억원)
- (구직서비스) 부모와 동거시 부모재산이 재산인정액에 포함되는 점을 고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재산요건 3→4억원 이하로 완화

### 2 역동적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 (+0.6조원)

- (성장단계별 자금공급) 모태펀드·정책융자 등 6,500억원 추가공급
  - 1,000억원 규모의 청년 전용 모태펀드 신규 조성(추경 600억원), 유망분야 창업기업 대상 융자 1.1→1.4조원\* 확대(추경 0.3조원)
  - \* 만 39세 미만 청년이 창업한 3년 이내 창업 기업 전용자금 500억원 포함
  - 예비유니콘·유니콘 기업에 집중투자하는 스케일업 펀드 2,500→5,000억원으로 2배 확대(추경 1,000억원)
- (글로벌화)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VC 투자 유치 및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자금지원, 액셀러레이팅 등 맞춤형 지원
  - 글로벌 투자펀드 규모 2,000→4,000억원 확충(추경 700억원),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 120→140개 팀 확대(13억원)

- (지역창업) 상대적으로 열악한 非수도권 창업생태계 조성
  - 지역 혁신기업, 규제자유특구 등에 투자하는 지역뉴딜 벤처펀드 1,700→2,300억원으로 확대(추경 400억원)
  - 지역 고유자원을 소재로 창업하는 로컬크리에이터 협업사업화 자금(기업당 3,000만원) 지원대상을 280→320개 팀으로 확대(12억원)

구분 (단위: 억원)	기존			추가			합계
	소계	국비	민간 등	소계	국비	민간 등	
<b>소계</b>	<b>1.7조원</b>	(1.3조원)	(0.4조원)	<b>+0.9조원</b>	(0.6조원)	(0.3조원)	<b>2.6조원</b>
<b>① 성장단계별 자금공급</b>	<b>13,500</b>	(12,000)	(1,500)	<b>+6,500</b>	(4,600)	(1,900)	<b>20,000</b>
· 청년 창업기업 전용 펀드	-	-	-	<b>+1,000</b>	(600)	(400)	<b>1,000</b>
· 창업기반지원자금	<b>11,000</b>	(11,000)	-	<b>+3,000</b>	(3,000)	-	<b>14,000</b>
· 스케일업 펀드	<b>2,500</b>	(1,000)	(1,500)	<b>+2,500</b>	(1,000)	(1,500)	<b>5,000</b>
<b>② 글로벌화</b>	<b>2,075</b>	(825)	(1,250)	<b>+2,013</b>	(713)	(1,300)	<b>4,088</b>
· 글로벌 투자 펀드	<b>2,000</b>	(750)	(1,250)	<b>+2,000</b>	(700)	(1,300)	<b>4,000</b>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b>75</b>	(75)	-	<b>+13</b>	(13)	-	<b>88</b>
<b>③ 지역창업 지원</b>	<b>1,788</b>	(688)	(1,100)	<b>+612</b>	(412)	(200)	<b>2,400</b>
· 지역뉴딜 벤처 펀드	<b>1,700</b>	(600)	(1,100)	<b>+600</b>	(400)	(200)	<b>2,300</b>
· 로컬크리에이터	<b>88</b>	(88)	-	<b>+12</b>	(12)	-	<b>100</b>

### 3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0.7조원)

※ 기정예산 0.4조원

- (전세임대주택) 역세권·대학가 등의 청년이 선호하는 주택 5천호를 추가 확보(1.1→1.6만호)하여 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0.3조원\*)
  - \* 추경 2천호(0.3조원) + 기정예산 3천호(0.4조원)
- (전세보증금) 전세반환 보증 보증료 인하 기간 6개월 연장(21.6→12월)
  - \* (보증료 인하) 보증금 2억원 이하→80% 인하 / 2억원 초과→70% 인하

### 4 청년 생활·금융 지원 (+0.1조원)

※ 기정예산 0.1조원

- (軍급식) 20대 장병의 눈높이에 맞는 軍급식 제공을 위해 7.1일부터 단가 8,790→10,000원으로 13.8% 대폭 인상(기정예산 752억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신규채용 청년에 대해 청년-기업-정부 3자 매칭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 확대(10→12만명, 146억원)
- (햇살론)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소득 청년·대학생에게 3~4%대 저금리 대출 지원하는 햇살론<sup>youth</sup> 1천억원(2,330→3,330억) 확대(기정예산 150억원)

**3 문화·예술·관광업계 활력 제고 (+0.3조원)**

※ 고용·청년대책 중복 0.1조원

◇ 코로나 장기화로 위축된 문화·예술·관광업계 활력 제고를 위해  
 ①일자리, ②공연·예술활동, ③문화소비 재개 등 지원

**1 여행·공연·체육업계 일자리 지원 (1.1만명) (+0.1조원)**

- (여행업) 관광업계 실직·휴직자 등을 고용하여 관광지 방역 관리 (3천명, 252억원), 중소 여행사 ICT 인력 채용 지원(1,600명, 150억원)
- (공연·예술) 현장 공연예술가 채용 확대(3.5→5.5천명, 115억원), 예술로 코로나 일상을 기록하는 문화예술 아카이브 지원(2천명, 기금변경 45억원)
- (체육) 실내체육시설 트레이너 추가 고용(1→1.2만명, 134억원)

**2 코로나로 위축된 공연·예술활동 회복 (+0.04조원)**

- (저소득 예술인) 다양한 장르의 창작 활동을 이어나가도록 창작준비금(3백만원) 지원대상 9천명 확대(12→21천명, 272억원)
- (청년 예술인) 소규모 대중음악 기획공연 750팀 신규 지원(30억원), 청춘마이크 400팀 및 연구·무용 등 공연예술제 30건 추가 지원(69억원)  
 \*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수요일) 청년예술인의 대중음악, 국악, 무용 등 다양한 활동 지원

**3 문화소비·여가활동 재개 등 (+0.2조원)**

- (문화소비) 여가 활동 재개 및 문화업계 회복을 위해 신규 3종, 기존 2종의 쿠폰·바우처 추가 발행(484억원, 소비창출 1,200억원)

구분	①프로스포츠 관람권(신규)	②영화쿠폰(신규)	③철도·버스 쿠폰(신규)	④체육쿠폰(확대)	⑤통합문화이용권(확대)	계
주요내용	축구, 야구, 배구, 농구 관람 50% 할인	영화관람권 1매당 6천원 지원	철도·버스 50% 내외 할인이용권	실내체육시설 월3만원 지원	저소득층의 문화·관광·체육 연10만원 지원	-
지원인원	100만명	167만명	14만명	40만명	20만명	341만명
재정소요	77억원	100억원	42억원	124억원	141억원	484억원
소비효과	150억원	200억원	140억원	520억원	200억원	1,200억원

- (관광기금 재정보장) 관광업계 용자 등 소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출국·카지노납부금 등 기금수입이 급감한 관광기금 보장(1,500억원)

**4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안전망 보강 (+0.6조원)**

※ 고용·청년대책 중복 등 0.2조원

◇ 코로나 피해가 큰 소상공인 및 저소득 취약계층의 안전망 보강

**1 소상공인 긴급자금 6조원 및 폐업 소상공인 지원 (+0.3조원)**

- (긴급자금) ①임차료 대출 3.8조원 한도 확대·보증료 인하(219억원) + ②중·저신용 소상공인에 2.2조원 규모 대출·보증 공급(2,474억원)

구분	지원방법	공급(억원)	예산(억원)	대출 조건			
				대출한도	금리	보증료 인하	
소계	-	60,000	2,693				
①임차료	집합금지	소진용자	8,000	가정예산	1→2천만원	1.9%	-
	제한·위기	신보보증	30,000	219		2~3%대	2년간 면제 3~5년차 △0.2%p
②저신용	금지·제한·위기	소진용자	12,000	2,000	1천만원	1.9→1.5%	-
	일반업종	지역보증	10,000	474	2천만원	2.3% 내외	1년차 면제, 2~5년차 △0.2%p

- (폐업 소상공인) 원활한 사업정리를 위한 금융·현금·컨설팅 지원(559억원)
  - 소상공인이 기존 채무를 폐업 후에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브릿지보증 확대(5→6천억원) 및 보증료 인하\*(80억원, 지신보 출연)  
 \* (금리) 2.3% 내외, (보증수수료) 당초 1.0% → 변경 0.5% (1년간 △0.5%p 인하)
  - 폐업지원금 50만원 지원을 연말까지 기한 연장(16→24만명, 406억원), 채무조정(신규)·컨설팅·철거비 등 원스톱 지원(0.65→1만명, 73억원)

**2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0.3조원)**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를 앞당겨('22.1→'21.10월) 부양의무자 요건으로 제외됐던 4.9만 가구 추가 지원(476억원)
- (에너지 바우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반영하여 저소득층 냉·난방 에너지바우처 18.7만 가구(70.2→88.9) 확대(221억원)
- (긴급복지) 코로나 피해지원을 위한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요건 한시 완화를 '21.6→9월까지 3개월 추가 연장(6만가구, 915억원)
- (자활근로) 기초수급자 등 근로빈곤층의 탈수급·자립을 위해 자활근로 연장(1.2만명 +2개월) 및 3천명(6.3→6.6만명) 신규 지원(403억원)
- (노인·장애인 일자리) 노인일자리 2만개(80→82만명) 지원, 중증장애인 진로설계·인턴 지원 등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2→2.4만명)



**【 소상공인 대책 (재도약지원 패키지)】 [21.2차 추경 5.7조원]**

**① 중증적 피해지원 (3.9조원) : 손실보상 법제화 + 기존 피해 추가지원**

- ① (손실보상 법제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 이후 방역조치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입은 금지·제한 소상공인의 "사업소득 감소분(인건비·임차료 추가반영)" 지원
  - ②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지원법」 개정 이전 방역조치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금지·제한·경영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폭 넓고(113만명) 두터운(최대 900만원)" 지원
  - ③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가입장려금(최대 12만원) 국비 지원
- ※ (집합금지 혜택 예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 + 새희망자금 200 + 버팀목자금 300 + 버팀목플러스\* 500 + 희망회복자금 900 + 손실보상 법제화 = 최대 2,050만원 + α

**② 긴급자금 (0.3조원) : 정책자금 공급(6조원 수준)을 통한 금융부담 완화**

- ① (임차료 용자) 저금리(소진용자 1.9%, 신보 보증 2~3%대) 임차료 대출(3.8조원 규모)의 지원한도 상향(1→ 2천만원) 및 지원대상 확대(집합금지·제한→ 경영위기업종 추가)
- ② (금지·제한·경영위기) 대출절벽에 놓인 저신용 집합금지·제한·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1천만원 한도 초저금리(1.5%) 대출(1.2조원 규모) + 최초 6개월간 원리금 상환 유예
- ③ (일반업종) 중·저신용 등급의 매출감소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 2천만원 한도의 저신보 특례보증(금리 2.3% 수준, 1조원 규모) 공급 + 1년차 보증수수료(Δ0.8%p) 면제

**③ 매출회복 (1.5조원) : 캐시백 등 지역상권 온기 회복 (소비창출 18조원 규모)**

- ① (상생소비지원금 1.1조원 + 지역사랑상품권 5조원 + 온누리상품권 0.3조원) 지역상권·생활밀착형 소비\* 유도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 매출 회복 뒷받침  
\*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물, 유흥업소 등 사용 제한
- ② (소비쿠폰·바우처) 문화·체육·관광 업종과 농어업 분야 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해 문화 분야 소비쿠폰·바우처 5종과 농·축·수산물 소비쿠폰 발행(+0.6조원)

**④ 구조전환 (0.06조원) : 폐업 소상공인 대상 금융·현금·컨설팅 등 원스톱 지원**

- ① (금융) 소상공인이 폐업시에도 기존 사업자 대출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브릿지보증 규모 확대(0.5→ 0.6조원) 및 보증수수료 절반 감면(1.0→0.5%)
- ② (현금) 폐업점포 재도약장려금 50만원 지원 기간을 연말까지로 확대('21.8→ 12월)
- ③ (컨설팅 등) 폐업 컨설팅 신청시 파산·개인회생 관련 전문 법률자문(신규), 점포철거비(최대 200만원) 등 원스톱 지원 및 지원대상 확대(0.65→1만명)

**4**

**지역경제 활성화**

**(+12.6조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온누리상품권, 농·축·수산물 소비쿠폰 등 발행 및 12조원 수준 지방재정 보장 추진

**① 지역상권·농어가 지원**

**(+0.4조원)**

- (지역상권 회복) 지역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5.3조원(18→ 23.3조원) 추가 발행\*(0.24조원)  
\* (지역사랑상품권) 15 → 20조원(+5조원), (온누리상품권) 3 → 3.3조원(+0.3조원)
- 방역상황 안정화에 맞춰 추석 연휴(9월말), 코리아세일페스타 플러스(11월초) 등 기간에 10% 할인 판매 물량 확대
- (농어가 지원) 농어가 소득회복 및 소비촉진을 위해 농·축·수산물 소비쿠폰 1,100억원\* 발행(소비창출 5,500억원)  
\* (농축산물 소비쿠폰) 900억원, (수산물 소비쿠폰) 200억원
- ※ 금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4+4 소비 쿠폰·바우처(0.5조원, 소비창출 2조원)의 하반기 단계적 재개도 병행

**② 지방재정 보장**

**(+12.2조원)**

- 지방교부세(금) +12.2조원 보장(지자체 5.9, 지방교육청 6.3)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코로나19 피해지원금 지방비 매칭 등 지원  
\* 추가세수로 인한 교부세(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대한 활용되도록 유도 (예: 지자체→ 사각지대 소상공인 등 지원 / 교육청→ 교육격차 해소 등 지원)

구 분	'21예산(A)	추경(B)	합계(A+B)
■ 지방교부세*	51.7조원	5.9조원	57.6조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3.3조원	6.3조원	59.6조원

\* 내국세의 19.24%

\*\* 내국세의 20.79% + 교육세 일부

## 기정예산 패키지 [3.0조원]

### ① 청년·저소득층 주거부담 완화 [+0.9조원]

- **(디딤돌 대출)** 주택구입자금 대출한도를 2→ 2.5억원으로 상향하여 서민층의 '내 집 마련' 지원 강화(기정예산 1,010억원)
- **(공공전세)** 시세 90% 이하의 공공전세주택 2천호를 중형 평형(60~85㎡) 위주로 공급 확대(기금변경 3,550억원)
- **(전세임대주택)** LH 등이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3천호 추가공급(기정예산 4,275억원)
- **(전세보증금)** 전세반환 보증 보증료 인하 기간 6개월 연장(21.6→ 12월)  
\* (보증료 인하) 보증금 2억원 이하 → 80% 인하 / 2억원 초과 → 70% 인하

### ② 취약계층 돌봄·생계·금융부담 완화 [+2.1조원]

- **(돌봄)**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등 소외계층의 돌봄 부담 경감(77억원)
  - (장애아동) 만6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 양육지원 확대(2→ 3천명, 연 720→ 840시간)
  - (취약계층) 저소득층 청소년부모·조손가족 6천가구 아이돌봄비용 자부담 5%p 완화
- **(생계)** 수산물 비축 확대(300억원), 중소식품기업 원료 구입자금 융자(100억원) 등 농수산물 가격안정 지원(639억원)
- **(금융)** 저신용자가 제도권 밖 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근로자 햇살론\* 2,700억원 및 햇살론<sup>youth</sup>\*\* 1,000억원 공급(480억원)
  - \* 근로자 햇살론 : 연소득 4,500만원 & 신용 6등급 이하 근로자에게 8~10%대 중금리 지원
  - \*\* 햇살론 youth : 만 34세 이하 취업준비생 및 사회초년생에게 3~4%대 금리 지원
  - 집합금지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한도를 1→ 2천만원 확대(0.8조원), 저신용 소상공인(금지·제한·위기) 대출금리 인하(1.9%→ 1.5%, 1조원)
- **(軍급식)** 7.1일부터 급식단가 8,790→ 10,000원 인상(752억원)